

미국 CBP 사전심사 동향 분석 리포트

[미국 관세 당국 사전판정 결정문 분석]

TF-IDF를 이용한 월별 주요 키워드 도출

토픽모델링을 통한 키워드 간 관계 분석 및 의미 도출

[미국 품목분류 결정 사례]

자동차용 신호기기와 부분품의 분류

스마트 스피커와 스마트 디스플레이의 분류

[미국 원산지 판정 사례]

공구 세트의 원산지 판정

의약품의 원산지 판정



CONTENTS

01. 서론 및 연구방법론	4
02. 품목분류 결정 동향	7
03. 품목분류 결정 사례 검토	15
04. 원산지 판정 동향	24
05. 원산지 판정 사례 검토	30





01. 서론 및 연구방법론

제1절 서론

1. 연구 배경

- 미국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은 한국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통관 이슈이다. CBP는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3,000건에 달하는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을 하였고 여기에는 품목분류 이슈와 원산지 판정 원칙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앞으로 대비해야 할 핵심 정보들이 담겨 있다.

2. 연구 목적

- 본 리포트에서는 CBP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문을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현재 CBP가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는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 범위

- 본 리포트에서는 CBP에서 2025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공개한 Ruling 중 품목분류 이슈 결정문 1,992건과 원산지 관련 결정문 1,048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범위 (Research Scope)

2025년 1-10월 CBP Ruling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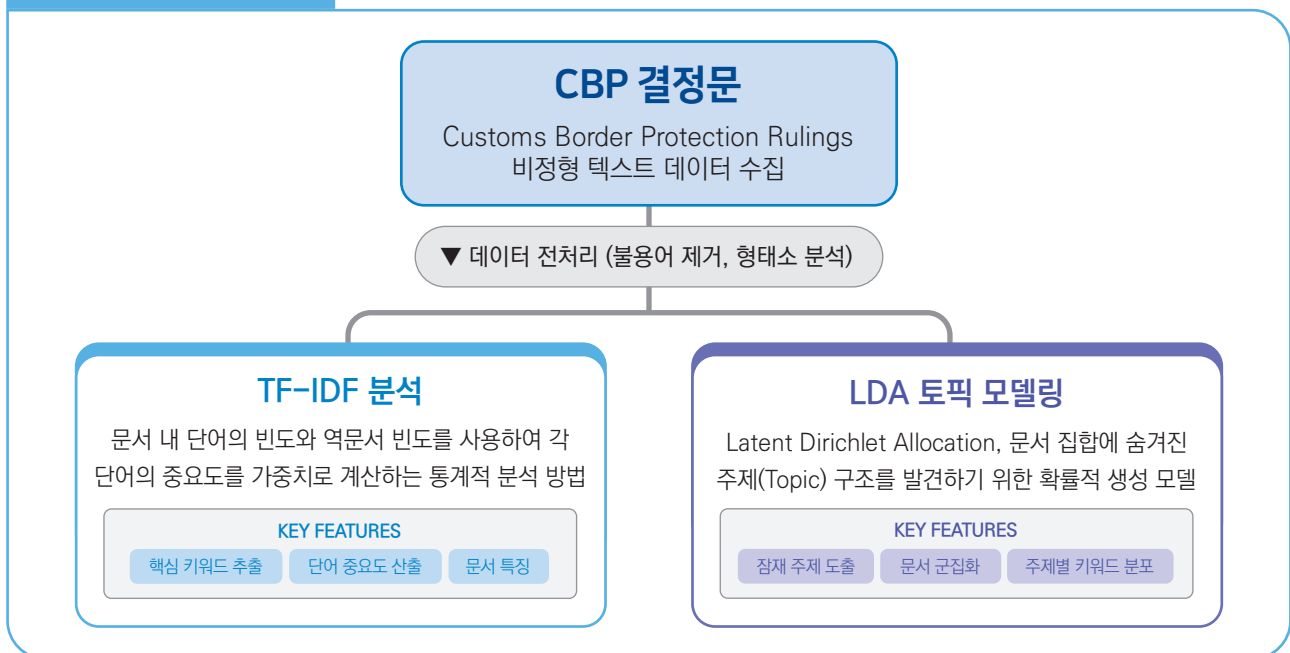
1. 분석 데이터

- 데이터 출처: CBP 공식 웹사이트(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 CROSS)
- 데이터 수집기간: 2025년 1월 ~ 2025년 10월

2. 텍스트 마이닝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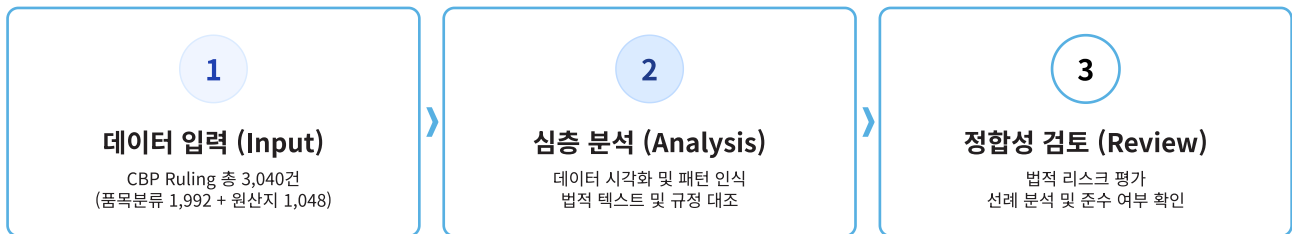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의 기초 전처리 작업 이후, TF-IDF, bi-gram 분석과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25년 1월~10월 사이 CBP의 결정문 흐름을 분석하였다.
- TF-IDF: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기법을 활용하여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문에서 키워드별 중요도를 산출했다. TF-IDF는 각 키워드의 빈도와 역문서 빈도를 곱하여 가중치를 계산하고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 LDA 토픽 모델링: 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으로 문서 집합에서 잠재 토픽을 자동으로 도출하는 방법이다. 본 리포트에서는 6개의 주요 토픽 클러스터를 분류하여 CBP 결정문의 핵심 주제를 파악하였다.
- N-gram 분석: 복수의 단어가 같이 연관되어 나타난 빈도를 추적하여 해당 단어간의 상관 관계를 찾는 분석법이다.(bi-gram 등)

〈그림 1〉 분석 방법 요약



3. 분류 사례 심층 리뷰

-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추출된 결과 값을 해석하고 TF-IDF 지수와 LDA 토픽모델링을 종합하여 해당 주제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개별 결정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전문가의 심층 리뷰를 추가하였다.





02. 품목분류 결정 동향

제1절 TF-IDF 분석 결과

1. TF-IDF 핵심 키워드

〈그림 2〉 TF-IDF 키워드 월별 분포



- 월별 TF-IDF 점수 상위 단어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월	상위 단어
1월	fabric(원단), glass(유리), shampoo(샴푸), preparation(조제용 물질), textile(직물), style(스타일), costume(의복)
2월	fabric(원단), synthetic(합성), president(대통령), opioid(오피오이드), style(스타일), panel(패널), rubber(고무)
3월	fabric(원단), style(스타일), steel(철강), bioterrorism(바이오테러리즘), decoration(장식), garment(의상), mushroom(버섯)
4월	golf(골프), wood(목재), aluminum(알루미늄), china(중국), fabric(원단), steel(철강), folder(폴더)
5월	steel(철강), fabric(원단), device(장치), machine(기계), china(중국), system(시스템), module(모듈)
6월	steel(철강), fabric(원단), yarn(방적사), aluminum(알루미늄), gas(가스), module(모듈), kit(키트)
7월	blood(혈액), glucose(포도당), steel(철강), fabric(원단), aluminum(알루미늄), set(세트), kit(키트)
8월	steel(철강), iron(철), device(장치), socket(소켓), motor(모터), aluminum(알루미늄),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9월	costume(의복), cable(케이블), steel(철강), set(세트), korea(한국), card(카드), fabric(원단)
10월	book(책), designate(지명), official(공식적인), filter(필터), bookmark(서표), steel(철강), canada(캐나다)

2.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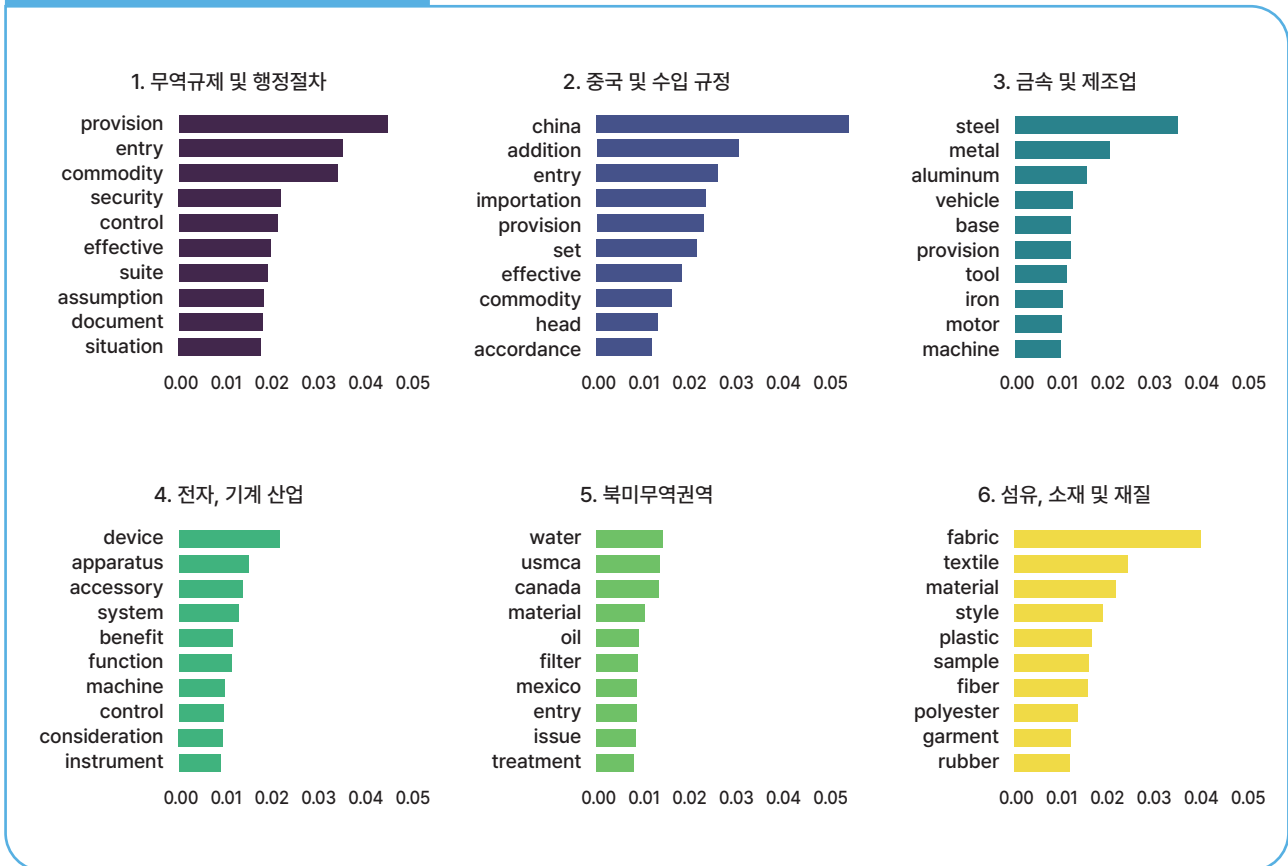
- TF-IDF 분석 결과 fabric, steel, aluminum 등의 단어가 전체적으로 높은 TF-IDF 값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가장 많이 나타난 단어는 fabric과 steel로 2025년 미국의 품목분류 최대 관심사가 섬유 및 철강 산업 분야였음을 시사한다.
- 주요 단어별 월별 출현 횟수를 분석하자면 2025년 연초 미국에서는 섬유 및 패션 산업 이슈가 많았으나 하반기로 가면서 금속 및 제조업 이슈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 Fabric (섬유): 1-7월, 9월 → 9회 출현 (가장 높은 빈도)
 - Steel (철강): 3-10월 → 8회 출현
 - Aluminum (알루미늄): 4-8월 → 5회 출현
- 특히 2월에 합성, 오피오이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4월~5월 사이에 중국 단어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었음을 확인되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25년 2월부터 미국에서 대중국 펜타닐 관세 부과를 시작하였고, 4월부터 상호관세를 통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제2절 LDA 분석 결과

1. LDA 토픽 모델링 결과

〈그림 3〉 LDA 토픽 모델링 결과



○ LDA 토픽모델링을 통해 6개의 주요 그룹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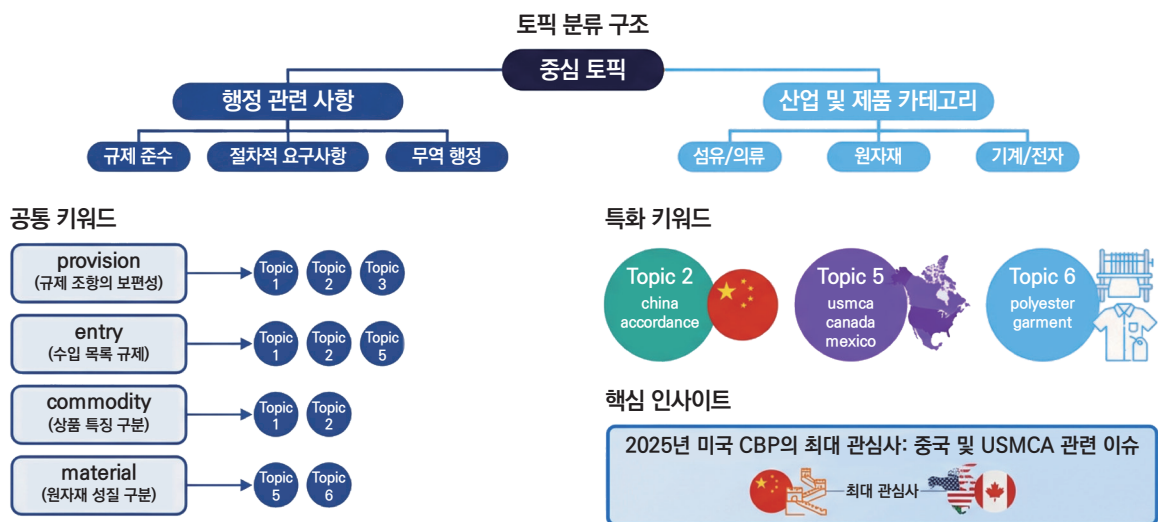
토픽명	키워드
1. 무역규제 및 행정 절차	provision(조항), entry(목록), commodity(상품), security(보안), control(통제), effective(효과), suite(객실), assumption(추정), document(서류), situation(상황)
2. 중국 및 수입 규정	china(중국), addition(부가물), entry(목록), importation(수입품), provision(조항), set(세트), effective(효과), commodity(상품), head(-ing;호), accordance(합치)

토픽명	키워드
3. 금속 및 제조업	steel(철강), metal(금속), aluminum(알루미늄), vehicle(차량), base(기초), provision(조항), tool(도구), iron(철), motor(모터), machine(기계)
4. 전자, 기계 산업	device(장치), apparatus(기구), accessory(부속품), system(시스템), benefit(이익), function(기능), machine(기계), control(통제), consideration(고려사항), instrument(정밀기구)
5. 북미무역권역	water(물), usmca(미국-멕시코-케나다 자유무역협정), canada(캐나다), material(재료), oil(기름), filter(필터), mexico(멕시코), entry(목록), issue(이슈), treatment(협정)
6. 섬유, 소재 및 재질	fabric(원단), textile(직물), material(재료), style(스타일), plastic(플라스틱), sample(샘플), fiber(섬유질), polyester(폴리에스터), garment(의상), rubber(고무)

2. 결과 요약

LDA 토픽 모델링 결과 분석

2025년 CBP 품목분류 핵심 키워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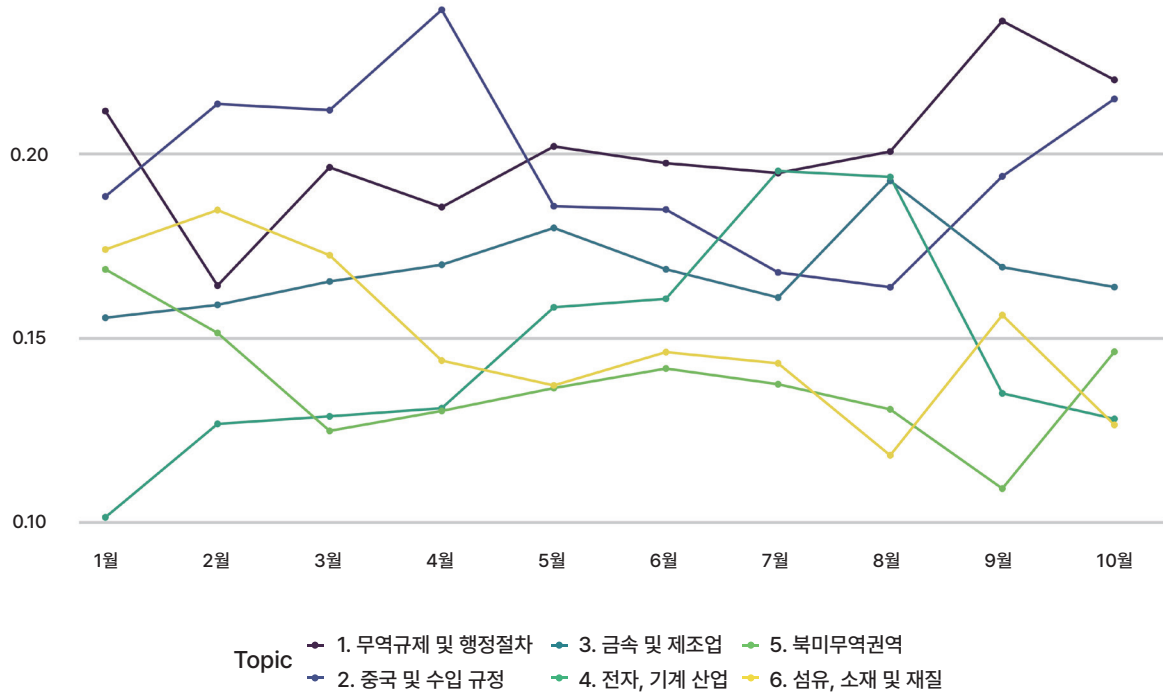


- 각 토픽은 크게 행정 관련 사항과 산업 및 제품 카테고리로 나뉘어지며, 중국 지역과 북미 경제 권역이 따로 구분되어 2025년 미국의 최대 관심사가 중국 및 USMCA 관련 이슈였음으로 추정된다.
- LDA 모델링 결과 여러 토픽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고빈도 키워드는 아래와 같다. 이 토픽은 CBP에서 품목분류를 고려할 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키워드로 추정된다.
 - provision: 토픽 1, 2, 3 → 규제 조항의 보편성
 - entry: 토픽 1, 2, 5 → 수입 목록 규제
 - commodity: 토픽 1, 2 → 상품 특징에 따른 구분
 - material: 토픽 5, 6 → 원자재 성질 구분
- 아래 키워드는 특정 토픽에서만 등장하여 해당 토픽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 토픽 2: china, accordance (중국 특화)
 - 토픽 5: usmca, canada, mexico (북미 특화)
 - 토픽 6: polyester, garment (섬유 특화)



3. LDA 토픽 월별 흐름 분석

〈그림 4〉 토픽 월별 비중 변화



- 각 LDA 토픽의 월별 비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토픽 1(무역규제 및 행정절차)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토픽 2(중국 및 수입 규정)는 2025년 연초에 높은 값을 유지하다가 4월에 가장 많은 비중 분포를 보인 뒤 5월에 감소하였다. 이후 대중국 이슈는 연말에 다시 급증하였다. 이는 4월 중국에 대한 125% 관세 부과와 5월, 미국 법원의 관세 부과 불법 판결,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한시적 관세 완화에 합의한 이슈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 대중국 이슈 감소하면서 USMCA 이슈가 증가하였다, 이는 대중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 등에서 생산된 물품의 USMCA 적용 관련 이슈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금속 및 제조업 토픽은 2025년에 걸쳐 전체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전자 및 기계 산업 이슈는 연초에 적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하반기에 증가하였다. 반대로 섬유 토픽은 연초에 높은 비중을 보이다 연말에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4. 시사점

- TF-IDF 분석 결과 품목분류에서 최대 이슈는 크게 섬유, 철강 부분으로 확인되었으며 상반기에는 섬유 제품 관련 이슈가 주를 이루었으나, 하반기에는 철강 산업 이슈가 증가하였다.
- TF-IDF 분석 결과 CBP에서 주로 품목분류 판정이슈가 되는 물품은 단순 소비재보다는 steel, fabric과 같은 산업재,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TF-IDF 분석 결과 steel, canada, usmca 등의 키워드가 하반기에 많이 등장하여 LDA 토픽 모델링으로 분석한 월별 토픽 변화 비율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다.
- LDA 토픽 모델링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품목분류, 규제 관련 이슈가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LDA 토픽 모델링에서 나타난 지정학적 이슈는 크게 중국과, USMCA로, 중국은 대중국 견제 그리고 USMCA는 최근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생산기지 역할로 크게 활용되는 멕시코 공장 관련 공급망 이슈가 주된 주제임으로 판단된다.
- CBP의 금속, 차량, 모터, 기계 관련 품목분류 판정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대중국 무역 토픽, USMCA 토픽과 더불어 해석하자면, 대중국 보편관세와 펜타닐 관세 부과로 기계, 차량 부품 등이 노동력이 저렴한 멕시코를 통해 일부 가공 후 미국으로 수입되었고. 이로 인해 우회 수출 규제와 FTA 적용을 위한 품목분류 판단 이슈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03. 품목분류 결정 사례 검토

1. 품목분류 CASE 1 (연관토픽: 금속, 제조업)

(1) 사실관계

쟁점물품	차량용 조명기구와 부분품
사례번호	HQ H332589
HTSUS	3926.30.50, 7318.22.00, 7415.21.00, 7907.00.60, 9405.91.30
제품설명	1. 황동제 장식용 반구형 피니얼 (Decorative Half Ball Finial) ◆ 재질: 황동 (brass) ◆ 치수: 높이 약 0.5인치 미만, 직경 약 0.75인치 ◆ 특징: 내부 나사산, 평평한 면에서 접근 가능 ◆ 용도: 유리 또는 식물 셰이드를 조이는 데 사용
	2. 장식용 5/16인치 육각 백플레이트 피니얼 ◆ 재질: 아연 (zinc) ◆ 형태: 둥근 상단, 육각형 6면, 평평한 바닥 ◆ 치수: 높이 약 0.5인치 미만, 직경 약 0.3~0.33인치 ◆ 특징: 중앙에 둥근 개구부, 내부 나사산 ◆ 용도: 백플레이트 스톨드 위로 조여 기구를 벽에 고정
	3. 장식용 탑 캡 (Decorative Top Cap) ◆ 재질: 성형 강철 (두께 0.03인치) ◆ 치수: 직경 약 2인치 미만, 높이 약 0.5인치 ◆ 형태: 둥근 형태, 중앙에 두 번째 원형 돌출부 (직경 약 1.5인치), 상단으로 갈수록 좁아짐 ◆ 특징: 중앙에 0.5인치 미만의 구멍, 내부 중공, 바닥 개방 ◆ 용도: 피니얼을 보조하여 유리 또는 식물 셰이드를 조임

제품설명	4. 10인치 화이트 아크릴 렌즈 ◆ 재질: 불투명 화이트 아크릴 ◆ 치수: 약 10 x 6.85인치 직사각형 ◆ 형태: 짧은 가장자리를 따라 오목한 형태로 구부러짐 ◆ 특징: 중앙과 짧은 가장자리에서 1인치 떨어진 곳에 장착용 구멍 ◆ 용도: 벽 스콘스 베이스 위에 장착
	5. 금속 장식 커버가 있는 10.5인치 화이트 아크릴 렌즈 ◆ 재질: 불투명 화이트 아크릴 + 강철 그레이트 ◆ 치수: 약 10.5 x 3.3인치 직사각형 ◆ 형태: 짧은 가장자리를 따라 오목한 형태로 구부러짐 ◆ 특징: 강철 그레이트 (약 6.13 x 4.74인치)가 아크릴 렌즈 중앙에 위치 ◆ 용도: 벽 스콘스 베이스 위에 장착
	6. 유리 쉼이드 ◆ 재질: 불투명 회색 거북이 껍질 마감 압축 유리 ◆ 형태: 중공 원뿔 형태 ◆ 치수: 큰 개구부 직경 약 4.75인치, 작은 측면 직경 약 2인치, 높이 약 5.2인치 ◆ 특징: 작은 측면 면에 직경 약 0.6인치의 구멍 ◆ 용도: 백열등 또는 LED 소켓 및 전구 설치용
	7. 8인치 돔 형태의 화이트 유리 (중앙 구멍 있음) 2개 ◆ 재질: 불투명 화이트 스몰 마감 압축 유리 ◆ 형태: 얇은 그릇 형태 ◆ 치수: 직경 약 8.625인치, 높이 약 2.9인치, 유리 두께 약 0.2인치 ◆ 특징: 바닥 중앙에 직경 약 0.44인치의 작은 구멍

(2) 쟁점사항

- 쟁점물품이 제8512호의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1) 제15부 주2: 범용성 부분품

-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다만, 오로지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과용 임플란트에만 사용하도록 특별히 만든 것은 제외한다.(제9021호).
 - 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
- 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2류까지(제7315호는 제외한다)의 부분품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 위의 규정과 제83류의 주 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제외한다.

2) 제16부 주1: 제외조항

-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

(4) 분석 및 판정

- 쟁점 물품은 제품 설명에서 언급된 9가지 물품으로 구성된 레저용 차량의 신호용 기기에 사용되는 구성품으로서, 자동차 조명용 신호기기에 사용되거나 전기를 직접 사용하는 기능은 없고 빛을 반사하거나 확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쟁점 물품은 총 9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1) 비금속제 피니얼과 캡

- Honda of America Manufacturing, Inc. v. United States 판결에 따르면, CBP의 부분품 여부를 확인하는 “초기 판단(initial test)”은 수입된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parts of general use)’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 신청인이 설명한 차량용 피니얼이 수행하는 기능은 제7318호의 해설에서 설명한 ‘너트’, 와셔“의 설명과 일치하며, 이는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제8512호에서 제외되고 각 재질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2) 아크릴 렌즈와 유리 쉼이드

- Jing Mei Auto. (USA)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제 부착구(fittings)는 제39류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비금속제의 장착구, 부착구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재질의 것들이란 차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차량의 실내외를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거나 다른 부품을 연결 또는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부착물로 정의하였다.
- CBP에서 부분품을 판단하는 규정은 크게 2가지이다.
 - 수입 물품이 결합될 대상 물품의 본질적·구성적 요소 또는 구성품으로서, 해당 물품이 없이는 그 대상 물품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
 - 수입 물품이 오로지 특정 물품과 함께 사용되도록 전용된 경우
- 쟁점 물품은 직접 빛을 발생시키지 않고 전구에서 발생하는 빛을 확산시키기 위한 용도이다. 비록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되었으나 차량의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차체용 장착구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용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

(5) 결론

- 쟁점물품을 제8512호의 차량용 조명기구로 분류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제하고 재질과 기능에 따라서 각각 분류하도록 하였다.
- 자동차용 부착물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15부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착물이 자동차 기능의 핵심 요소를 구성하는 경우 자동차 부분품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 CBP는 차량 전용 설계나 명칭만으로는 부분품 성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물품이 차량에 부착되어 차량의 핵심·필수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는지 여부 등 부착 방식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용 부분품 여부를 판단한다.
-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방 헤드램프에 부착되는 플라스틱 커버 렌즈를 제8512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 (품목분류3과-2269) 쟁점물품은 해당물품과 유사한 제품으로 보이는데, CBP가 자동차 부분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참고: 우리나라 분류 사례-자동차 전방 헤드램프 플라스틱 커버 렌즈



*사진 출처: 국가관세법령정보포털

2. 품목분류 CASE 2 (연관토픽: 전자, 기계산업)

(1) 사실관계

쟁점물품	구글 스마트 스피커와 스마트 디스플레이
사례번호	HQ H319100
HTSUS	8517.62.00, 8518.21.00, 8518.22.00
제품설명	1. 구글 스마트 스피커 "Google Home Mini," "Nest Mini (2nd Gen)," "Google Home," 및 "Google Home Max"는 오디오 스피커, 마이크, 무선 송수신 모듈(Bluetooth 및/또는 Wi-Fi), 제어 패널, 정전식 터치 센서 및 음성 어시스턴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스마트 스피커. 무선 송수신기는 인터넷에 액세스하기 위해 장치를 가정용 라우터에 연결. "Google Home Mini," "Nest Mini (2nd Gen)," 및 "Google Home Max"에는 Bluetooth 송수신기도 있어 사용자의 휴대폰 및 기타 장치에 연결하여 음악 재생과 같은 기능을 수행. "Google Home Max"에는 4개의 스피커(2개의 114mm 고편위 우퍼와 2개의 18mm 트위터)가 있으며, Nest Mini (2nd Gen)에는 특정 온디바이스 처리를 수행하는 기계 학습 칩이 포함되어 있다.
	2. 스마트 디스플레이 "Nest Hub" 및 "Nest Hub Max"는 LCD 또는 HD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오디오 스피커, 마이크, CPU 및 CDRAM, 무선 송수신 모듈(Bluetooth 및/또는 Wi-Fi)로 구성된 스마트 디스플레이. "Nest Hub Max"에는 메가픽셀 카메라도 포함되어 있다. "Nest Hub" 및 "Nest Hub Max"는 오디오(음성) 또는 터치 스크린 입력을 사용하여 Google의 원격 서버에 액세스가 가능. 서버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가장 적절한 행동을 결정함. Google 서버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거나 내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전제품이나 장치(예: 조명 켜고 끄기)의 제어(홈 Wi-Fi를 통해 제어 명령 전송)를 도와줌. 서버는 요청된 정보를 장치로 다시 전송하고, 제어 신호는 홈 라우터/Wi-Fi 연결(예: 조명 및 카메라 등 제어)에서 전송됨. 스마트 디스플레이는 데이터를 수신하고 적절한 형식(즉,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 텍스트)으로 변환하여 음악, 비디오 또는 화면의 텍스트로 사용자에게 제시함. 스마트 디스플레이에는 내장된 Google Chromecast도 있어 사용자가 외부 장치(예: 휴대폰, 컴퓨터 등)에서 스마트 디스플레이로 콘텐츠를 스트리밍할 수 있음. 스마트 디스플레이는 Netflix 및 YouTube TV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된 비디오 및 사운드도 스트리밍할 수 있음. 스마트 디스플레이의 터치스크린 기능에는 메뉴 탐색, 설정 및 미디어 제어를 위한 스와이프 및 탭이 포함됨.

제품사진



*사진 출처: 구글 스토어

(2) 쟁점사항

- 쟁점물품이 제8517호 (음성,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의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용 기기를 규정)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제8518호의 확성기와 스피커로 분류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분석

1) 통칙 1호 내지 6호

- 통칙 1호를 우선하여 분류하되 그에 따를 수 없는 경우 2호 내지 6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2) 제16부 주3

-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4) 분석 및 판정

1) 스마트 스피커

- 스마트 스피커는 제8517호의 수신·변환·송신 장치와 제8518호의 증폭기 및 확성기가 결합된 복합기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한 품목분류의 핵심 쟁점은 스마트 스피커의 주요 기능이 데이터의 수신·변환·송신 기능에 있는지, 아니면 증폭기 및 확성기 기능에 있는지 여부이다.
- 신청인은 스마트 스피커(및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여 사용자의 생태계에 연결된 무선 스피커로 배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CBP는 품목분류상 쟁점은 스마트 스피커가 데이터의 수신·변환·송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기능이 장치의 주된 기능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지적한다.
- CBP는 HQ H281100(2018. 6. 27.)에서 확성기와 같은 장치의 주요 기능이 신호 소스에 연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신한 신호를 소리로 변환하는 데 있는 경우, 해당 장치는 제8518호의 확성기로 기능한다고 판단하였다.
- 스마트 스피커는 디지털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를 소리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송수신 기능은 소리 재생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에 해당한다. 또한 스마트 스피커는 내장된 Google Assistant를 통해 피어 투 피어(Peer-to-Peer) 네트워크 방식으로 데이터를 송신하여, Wi-Fi를 지원하는 각종 기기에 대한 음성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 스마트 스피커는 다양한 출처의 디지털 오디오 파일에 접근하여 이를 재생할 수 있으며, 그 핵심적인 기능은 신호 소스에 단순히 연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신한 신호를 소리로 변환하는 것, 즉 스피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다.
- 무선 스피커와 Bluetooth 및/또는 Wi-Fi 기능은 "Google Home Mini," "Nest Mini (2nd Gen)," "Google Home," 및 "Google Home Max"에 주요 기능중 하나이다. CBP는 RF, Bluetooth 및 Wi-Fi 연결을 사용하여 작동하는 무선 스피커를 제8518호로 일관되게 분류해 왔다. 음성 인식 구성요소의 추가는 스피커 사용을 지원하는 2차 기능이므로 현대 무선 스피커의 향상된 기능으로 간주될 뿐, 그 자체로 본질적 특성을 새로 부여할 만큼 중요한 기능이라 볼 수는 없다.

2) 스마트 디스플레이

- 스마트 스피커와 마찬가지로, 스마트 디스플레이는 제8517호의 수신, 변환 및 송신 장치와 호 제8518호의 증폭기 및 확장기로 구성된 복합 기계이다.
- 신청인은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스마트 스피커와 동일한 기본 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스피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진 및 검색 결과 표시, 동영상 재생 기능과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추가로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마트 디스플레이는 Google 서버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원격 접속 장치로도 기능한다.
- 스마트 스피커와 마찬가지로 스마트 디스플레이는 Google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스마트 스피커와 달리, 스마트 디스플레이는 수신한 데이터를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변환하여 음악, 영상 또는 화면상의 텍스트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 스마트 디스플레이의 주요 기능은 소리를 재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신·송신하는 데 있다. 스마트 디스플레이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사용자의 명령을 수신·해석·송신하고 이에 응답하며, 음성 입력을 통해 다양한 장치의 작동을 제어하거나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따라서 스마트 디스플레이의 본질적인 기능은 장치에 포함된 스피커 구성요소를 통해 소리를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네트워크에 접근하거나 연결하는 데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 디스플레이는 제8517.62호로 분류된다.

(5) 결론

- 스마트 스피커의 통신기능은 소리를 확장하기 위한 기능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517호에서 제외되며 제8518호에 분류한다.
- 스마트 디스플레이는 함께 제시된 스마트 스피커와는 다르게 단순히 소리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다양한 형식(즉,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 텍스트)으로 변환하고 음악, 비디오 또는 화면의 텍스트로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CBP는 이를 전통적인 스피커(소리를 확장시키거나 재생)의 기능을 벗어나는 것으로, 스마트 스피커와 다르게 데이터 송수신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스마트 디스플레이의 기능은 스피커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주기능으로 보아 제8517호의 통신기기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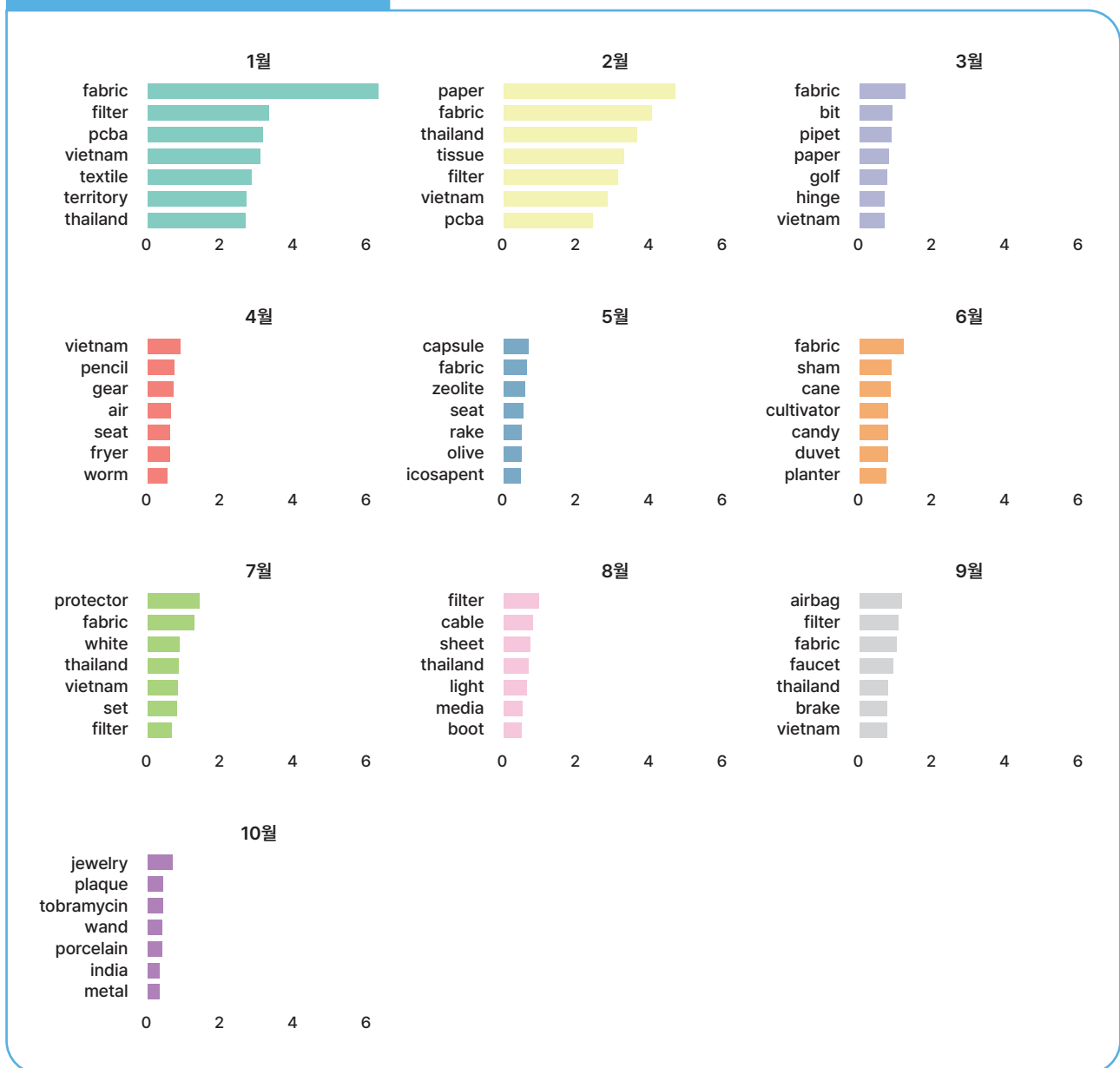


04. 원산지 판정 동향

제1절 TF-IDF 분석 결과

1. TF-IDF 핵심 키워드

〈그림 6〉 TF-IDF 키워드 월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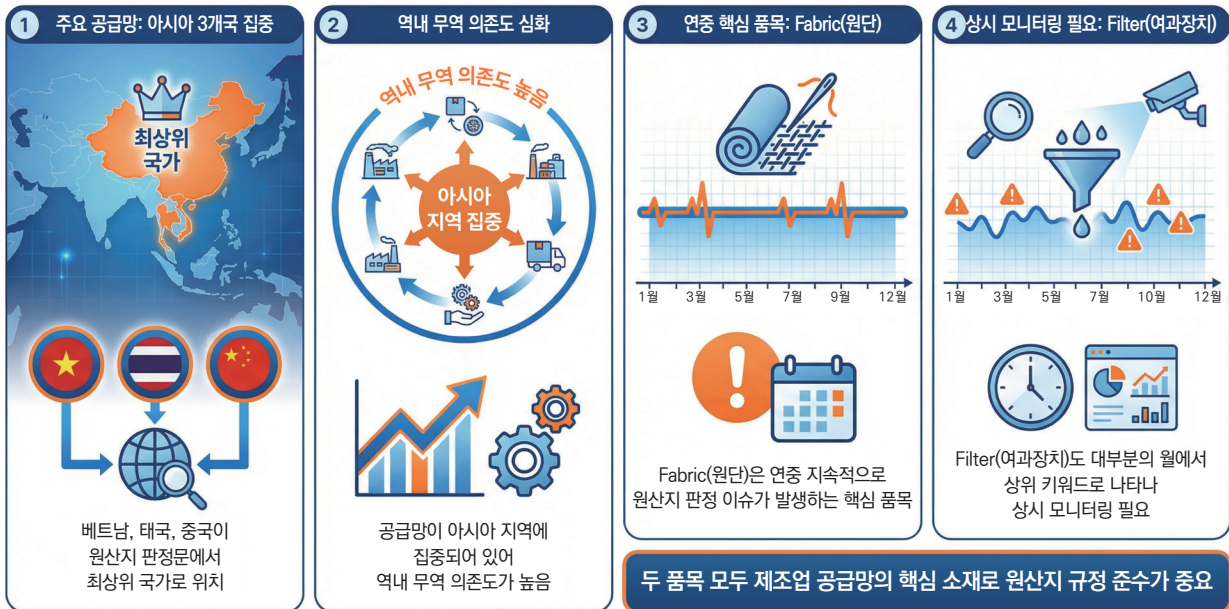


- 월별 TF-IDF 점수 상위 단어는 아래와 같다.

월	상위 단어
1월	fabric(원단), filter(여과 장치), pcba(인쇄 회로 기판 조립), vietnam(베트남), textile(섬유 산업), territory(영역), thailand(태국)
2월	paper(종이), fabric(원단), thailand(태국), tissue(화장지), filter(여과 장치), vietnam(베트남), pcba(인쇄 회로 기판 조립)
3월	fabric(원단), bit(비트), pipet(피펫), paper(종이), golf(골프), hinge(경첩), vietnam(베트남)
4월	vietnam(베트남), pencil(연필), gear(기어), air(공기), seat(좌석), fryer(튀김 기구), worm(웜)
5월	capsule(캡슐), fabric(원단), zeolite(제올라이트), seat(좌석), rake(갈퀴), olive(올리브), icosapent(이코사펜트)
6월	fabric(원단), sham(가짜), cane(줄기), cultivator(경운기), candy(사탕), duvet(이불), planter(화분)
7월	protector(보호물), fabric(원단), white(백색), thailand(태국), vietnam(베트남), set(세트), filter(여과 장치)
8월	filter(여과 장치), cable(케이블), sheet(시트), thailand(태국), light(조명), media(매체), boot(부츠)
9월	airbag(에어백), filter(여과 장치), fabric(원단), faucet(수도꼭지), thailand(태국), brake(제동 장치), vietnam(베트남)
10월	jewelry(귀금속), plaque(명판), tobramycin(토브라마이신), wand(지팡이), porcelain(자기), india(인도), metal(금속)

2. 결과 요약

원산지 판정 이슈 현황 분석



- (국가명 키워드) 국가명 키워드에는 베트남, 태국, 중국이 상위에 위치하여, 원산지 판정문에서 나타나는 주요 공급망은 아시아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
- (품목명 키워드) fabric(원단)과 filter(여과 장치)의 경우, 대부분의 월에서 상위에 위치한 키워드로 연중 지속해서 원산지 판정 이슈가 존재하는 품목으로 해석된다.

제2절 LDA 분석 결과

1. LDA 토픽 모델링 결과

〈그림 7〉 LDA 토픽 모델링 결과



- LDA 토픽모델링을 통해 6개의 주요 그룹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토픽명	키워드
1. 철강 및 공구	vietnam(베트남), steel(철강), tool(공구), transformation(변형), china(중국), paper(문서), character(특성), handle(핸들), operation(운용), head(호)
2. 중국 및 수입 규정	material(재료),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mexico(멕시코), ring(링), metal(금속), requirement(요건), canada(캐나다), wheel(바퀴), treatment(협정), jewelry(귀금속)

토픽명	키워드
3. 금속 및 제조업	transformation(변형), commodity(상품), china(중국), security(보안), provision(조항), material(재료), importation(수입품), entry(목록), ingredient(성분), food(음식)
4. 중국·동남아 공급망 제품	thailand(태국), china(중국), transformation(변형), commodity(상품), control(통제), character(특성), cable(케이블), suite(객실), wire(와이어), position(위치)
5. 전자 부품	pcba(인쇄 회로 기판 조립), filter(필터), board(보드), cover(덮개), china(중국), air(공기), device(장치), transformation(변형), step(단계), light(불빛)
6. 섬유·의류·침구류	fabric(원단), textile(직물), territory(영역), apparel(의류), possession(소유), china(중국), pillow(침구류), polyester(폴리에스터), requirement(요건), manufacturing(제조)

2. 결과 요약

원산지 결정 핵심 인사이트

2025년 CBP 원산지 판정 1,048건 LDA 토픽 분석



지역 독립성: USMCA vs 중국·동남아

USMCA 특혜 원산지 = 주요 쟁점

전자 부품: 중국 공급망 의존

- 각 토픽은 크게 국가를 주요 키워드로 포함하는 주제와 산업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한 주제로 구분되며, 특히 중국·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토픽과는 별도로, USMCA 체약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를 포괄하는 토픽이 하나의 독립된 주제를 형성한다.
- 토픽 2는 USMCA 협정에 따른 특혜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주제로, 이는 미국의 원산지 판정에서 비특혜 원산지 판정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적용 여부, 특히 USMCA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 우리나라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에 해당하는 전자 부품류가 하나의 토픽으로 도출되었으며, 해당 토픽에 중국이 주요 키워드로 포함된 점은 전자 부품 분야에서 중국이 핵심적인 공급망 축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05. 원산지 판정 사례 검토

1. 원산지 CASE 1 (연관토픽: 철강 및 공구)

(1) 공구 세트(Tool set)

- 판정문: N350425
- 관련 토픽: Topic 1(철강 및 공구·용품)
- 쟁점 사항: 서로 다른 국가에서 제조된 구성품들을 하나의 공구 세트로 조합한 제품의 원산지 판정 방법
- 수입 형태: 플라스틱 케이스에 포장되어 소매용 판매 상태(ready for retail sale)로 수입
- 물품 정보: 6가지 물품으로 구성된 공구 세트

구성품	참고용 사진	수량	원산지
Ratchet handle (래칫 핸들)		1피스	베트남
Adapters (어댑터)		2피스	베트남
Magnetic bit holder (자석 비트 홀더)		1피스	베트남
Precision screwdriver bits (정밀 스크류 드라이버 비트)		20피스	중국
Screwdriver bits (스크류 드라이버 비트)		20피스	중국
Sockets (소켓)		9피스	중국

*사진 출처: GreatStar Industrial USA

○ 판단 내용

- CBP는 쟁점 물품이 HS 통칙 제3호(GRI 3)에 따른 소매용 세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각 구성품을 개별적으로 품목분류하지 않고 하나의 단일 물품으로 품목분류하였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는 여러 구성품 중에서 제품에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하는 구성품의 품목분류를 따른다. CBP는 원산지 판단 역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품의 원산지에 따라 쟁점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미국의 Section 301 조치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행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제재로서, 쟁점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으로 판단될 경우 Section 301 적용 대상이 되므로 원산지 판단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 각 구성품별로 품목분류 및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지 않고 단일의 제품(소매용 세트 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Section 301 적용 대상 역시 개별 구성품이 아닌 단일의 제품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의미한다. 요컨대 품목분류·원산지 판정·Section 301 적용 대상 판단 모두가 통칙 제3호에 따른 소매용 세트의 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단일 물품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품의 판단이 중요하다.
- 쟁점 물품에 대하여 CBP는 비트(bit)나 소켓(socket) 등이 아닌, 툴 홀더(예: 래칫 핸들)를 세트 전체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품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툴 홀더가 없는 경우에는 비트나 소켓 등 다른 구성품이 없는 경우보다 공구 세트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점을 들었다.
- 이에 따라 CBP는 툴 홀더를 제조한 베트남을 쟁점 물품의 원산지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쟁점 물품에는 Section 301 에 따른 추가 관세 역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판결 의의

- 본 판결은 통칙 제3호에 따른 소매용 세트 요건에 부합하는 물품이라면 품목분류와 마찬가지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품의 원산지를 전체 세트의 원산지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구 세트의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공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팁·비트 등이 결합되어야 하는 툴 홀더가 원산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핵심 구성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그리고 소매용 세트로 분류되는 물품의 경우, 전체 세트에 대한 원산지가 Section 301 적용 대상 국가인지 여부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세트에 포함된 개별 구성품별 원산지에 따라 Section 301 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원산지 CASE 2 (연관토픽: 식품 및 화학원료)

(1) 의약품(Norethindrone Acetate/Ethinyl Estradiol Tablets)

- 판정문: N353195
- 관련 토픽: Topic 3(식품·화학원료)
- 쟁점 사항: 주 성분과 보조 성분을 혼합하여 최종 의약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수입 형태: 정제(tablet) 제형의 의약품
- 물품 정보: 호르몬 성분의 경구형 피임약

수행 공정	산출물	수행 국가
활성 제약 성분(API)인 Norethindrone Acetate 및 Ethinyl Estradiol 제조	원료 의약품	네덜란드
API를 각종 비활성 성분(inactive ingredients)과 혼합하여 제형화된 정제 생산	완제 의약품(정제)	중국

- 판단 내용
 - 실질적 변형 여부는 공정에 따른 결과물이 기존 물품과 비교하여 새로운 품명(new name), 특성 (character), 용도(use)를 갖는지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의약품의 실질적 변형 판단에서는 가공의 복잡성과 최종 물품이 원재료의 본질적 정체성과 성질(essential identity and character)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벌크(bulk) 형태에서 계량된 용량(measured doses)으로 제형화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 다만, 2개 이상의 활성 제약 성분(API)을 결합하여, 각 API를 단독으로 복용할 때보다 추가적인 의학적 효능을 제공하는 복합제(combination drug)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될 수 있다.
 - 쟁점 물품에 함유된 두 API는 역할이 상이하며, Norethindrone Acetate은 임신을 예방하고 Ethinyl Estradiol은 월경 출혈을 조절하는 기능을 각각 수행한다.
 - CBP는 두 API가 서로 다른 목적을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네덜란드산인 두 API를 중국에서 비활성 성분과 혼합하여 복합 정제(최종 제형)로 제조하는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원산지는 API 생산국(네덜란드)이 아니라 최종 정제를 제조한 중국으로 결정되었다.

○ 판결 의의

- 일반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 혼합 공정은 단순 공정(예: 물품의 세척, 절단, 라벨링 등)으로 보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 그러나 본 판결은, 주 성분에 해당하는 원료 의약품이 이미 다른 국가에서 완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혼합 공정을 통해 주 성분이 단독으로는 갖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이 완제 의약품에 부여되었다면, 혼합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CBP 사전심사 동향 분석 리포트

이민우 | 연구 2실 | 부연구위원

E-mail: ghuuuu@kctdi.or.kr, Tel: 02-3416-5109

조현기 | 연구 2실 | 부연구위원

E-mail: chg90@kctdi.or.kr, Tel: 02-3416-5168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